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
	배포일자	2023년 7월 11일(화) 총 2매	
담당 부서	사회재난과	담당자	• 시설물재난관리팀장 김상규 ☎440-1851 • 담당자 서원형 ☎440-1852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안전사고 예방위해 환기구 설치·관리 기준 마련

- 신설 환기구는 사람,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 설치가 원칙 -
- 기존 환기구는 덮개의 규격모양, 구조물 추가설치 등 보수보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보도에 설치된 일부 환기구에 의한 통행 불편, 환기구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「환기구 설계·시공·관리·보강 기준」을 만들어 신설·기존 환기구 등에 적용한다고 밝혔다.

그동안 시설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환기구 설치·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.

이 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,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. 또 보행로에 이미 설치된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,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.

또한, 시설물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2.0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. 지면에서 0.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,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

하도록 했다. 이 밖에도 환기구 점검 방법, 점검 주기,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.

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“그동안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, 이번에 「환기구 설계·시공·관리·보장 기준」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”면서 “시민들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<환기구 접근 방지시설 설치 사례>



<환기구 설치 높이 사례>